

2020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9차 회의록

- 회의일시 : 2020. 10. 23. (금요일),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김영운(부위원장), 박전열, 변미혜, 성애순, 원명(김종민), 윤중강, 임재원, 조남규(이상 8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무 형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검토사항】

1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수궁가)’ 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	비공개
2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적벽가)’ 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	비공개
3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 단체 인정 검토	공개

검 토 사 항

1.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수궁가)’ 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2.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적벽가)’ 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3.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검토

가. 제안사항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9년 제15차 무형문화재위원회(’19.11.15.) 결과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조사를 실시(’19.9.19.)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검토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추진경과

- ‘19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출 요청(’18.10.11.)
 - 전라북도,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지정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 제출(’18.12월)
- ‘19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에 포함(’19.1.23.)
- ‘19년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신청서 제출(’19.5.8.)
-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가치 조사(’19.8.22.)
- ‘19년 무형문화재위원회, 신규종목 지정가치 여부 검토(’19.11.15.)
 - 의결 : 보류함.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가치가 있어, 관련 보유단체 인정조사를 실시함.
- ‘20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에 포함(’20.1.22.)
-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조사 실시(’20.9.19.)

2) 지정현황

- 지정명칭 :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 지 정 일 : 2005.3.11.(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32호)
- 전승단체 :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보존회(’05.3.11. 인정, ’98.10.2. 설립)
 - 보유자 : 없음(이수자 3명)

3) 보유단체 인정조사 및 결과

- 조사일시 : '20. 9. 19.(토) / 10:00~12:20
- 조사장소 : 전북 순창군 금과면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교육관 일원
- 조사자 : 관계전문가 3명
- 조사대상 : 1개 단체

단체명	대표자	설립년월	비고
순창농요금과들소리 보존회	김봉호	'98.10.2.	

- 조사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조사의 조사지표에 따른 전승 능력, 전승환경, 전승활동 기여도 평가
- 조사지표 검토
 - 제외지표 : 해당 없음
 - 전승단체가 운영된 기간의 지속성 평가: 전승단체가 운영된 기간은 보존회 자체 설립 연도를 기준으로 함.
 - 전승활동 실적 평가: 전승활동 실적은 제출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자료 증빙이 가능한 행사만을 그 대상으로 함.
- 실기능력 평가(기량평가)
 - 현장 실연(야외)을 원칙으로 함.
- 면담조사
 - 단체의 핵심 전승자 대상(이수자, 보존회장 포함 5명 이내)
 - 종목 이해도, 단체 내 전승 활성화 정도, 전승의지, 전승계획 등 질의응답
- 보유단체 인정조사 결과 : 비공개

라. 검토의견

- 신규종목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보유단체 인정조사를 통해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을 추진하는 사항임.
-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보유단체 인정조사 결과 전라북도 동·남부 지역의 농요로서 해당 문화권적 독특한 특성을 반영하는 농요인 점은 의의가 있으나, 보유단체를 인정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조사자 공통으로 해당 지역의

문화 보편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음악적인 요소, 앞소리꾼의 창법 문제, 앞소리와 뒷소리의 부조화 등 전승기량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음.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마. 검토할 내용 :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검토

바. 의결사항

- 부결함(출석 8명, 가결 8명)
 - 시도 무형문화재로 존치함.